강원지방우정청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 - 23호

2022년도 강원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23일

강원지방우정청장

1.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

직급(직종)	시험 구분	선발 예정 인원 (총 23명)	시험과목(선택형 필기시험) 4과목
우정9급 우정서기보 (계리)	공개경쟁 채용시험	일 반: 21명 장 애 인: 2명	한국사(상용한자 포함)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(기초영어 포함)

□ 모집단위(지역)별 구분 모집표

(단위: 명)

구분	모집단위(지역)	선발인원
강원지방우정청(일 반)	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	21
강원지방우정청(장애인)		2

※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(기관)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.

※ 우정9급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 등에서 근무합니다.

※ 계리직종의 직무 내용은「우체국 금융업무·회계업무·현업 창구업무·현금 수납」등 각종 계산 관리업무 및 우편 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.

2. 시험 방법

○ **제1차 시험**: 선택형 필기시험

※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: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
- 상용한자는 한국사에, 기초영어는 컴퓨터 일반에 각 1~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
- 시험시간: 80분(문항당 1분, 과목별 20분 기준)

○ **제2차 시험**: 면접시험

3. 응시 자격

가. 응시 결격 사유: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(판단기준일: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)

ㅇ **국가공무원법 제33조**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ㅇ **국가공무원법 제74조**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나. 응시연령: 18세 이상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다. 학력 및 경력: 제한 없음

라.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
○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○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외의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(단,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)

○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(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는 **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마.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

○ 응시자는 공고일('22. 2. 23.) 현재 「**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지역**(강원도)에 **주민등록**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※ 향후 채용시험이 진행될 경우,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

시험명	접수 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
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	'22. 3. 15.(화) ~3. 18.(금) ※ 접수 취소 3. 21.(월) 21:00까지	필기시험	'22. 5. 2.(월)	'22. 5. 14.(토)	'22. 6. 21.(화)
		면접시험	'22. 7. 12.(화)	'22. 7. 23.(토)	'22. 7. 29.(금)

○ 시험 일정은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kw)에 공고합니다.

○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「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」에 게시하며,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.

○ 필기시험 성적 확인 방법·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하며,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 방법 및 시간

○ 접수 방법: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kw) 內 **「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 접수 바로가기」**에서 접수 가능

○ 접수 시간: 접수 시작일 09:00부터 접수 종료일 21:00까지

○ 응시수수료: 5,000원

※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·카드 결제·계좌이체 비용) 발생

※ 응시원서 접수 기간 內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, 응시원서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됩니다.

※ 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**차상위계층이거나*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원서 접수마감 후,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저소득층 대상 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.(별도의 처리비용은 미반환)

○ 사진등록: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**사진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(규격) 반명함판 증명사진, 크기 3.5㎝×4.5㎝(140×180pixel), 파일용량 100Kbyte미만, 파일형식 JPG/GIF

※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, 모자,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, 얼굴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

나.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

○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,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장애유형(시각·지체·뇌병변)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붙임의 안내문을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○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內,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 ※ (취소 기간) '22. 3. 21.(월) 21:00까지

○ 원서 접수 시,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6. 필기(제1차)시험 응시 장소

모집단위(지역)	필기(제1차)시험 응시 장소
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(일반, 장애인)	원주시

※ 응시 장소는 시험장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원서접수 시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7. 가산점 적용

가.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**1개만 적용**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※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개정(2015. 5. 6.)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합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에 확인

다. 의사상자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하며,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.

※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
※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,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(☎044-202-3255)에 확인

라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○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**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** 하며, **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**하여야 합니다.

※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8. 기타 사항

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40점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응시자는 응시표·답안지·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**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**이 될 수 있습니다.

다.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「학업의 계속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 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나라일터(http://gojobs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마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 또는 통지합니다.

바. 「**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**」**은** 비정기 시험으로, 시험 실시가 결정될 경우, 사전 공고를 통해 일정 등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사. 수험생께서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19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(☎ 033-749-20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강원지방우정청 KOREA POST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도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

1. 신청 대상

○ 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**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**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- **시각·지체·뇌병변**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○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2. 신청 절차

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	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, 본인의 해당 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
⇩	
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	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
⇩	
구비서류 제출	본인이 신청하는 편의신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 일체를 강원지방우정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○ **제출기한: 2022. 3. 15.(화) ~ 3. 18.(금)** **※ 제출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** **[서류 제출처] : 강원지방우정청(상세주소 붙임)으로 송부** **※ 하지지체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팩스로 송부 가능**

3. 편의지원 관련 유의사항

1. **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**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 여부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(정도)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**의사진단(소견)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**)

2. 의사진단(소견)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 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(2020. 3. 19. 이후 발급)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**하게 인정됩니다.

※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
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(www.hira.or.kr) → [병원・약국 찾기]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,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야 함)

3.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는 **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**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
※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예시된 각 **장애유형별 의사진단서 샘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(밑줄 참조)을 누락됨 없이 진단서에 확인** 받으시기 바라며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**의사진단서에 따른 편의를 제공**합니다.

4.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시험기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

5. 의문사항 발생 시 **반드시 사전에 붙임의 해당 서류 제출처로 문의하신 후 처리**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등

▣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미만인 자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 ※ **제출기한**: 2022. 3. 18.(금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두 눈의 교정시력(좌, 우 각각 명시)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.1, 우0.2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(A4 크기)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80분 → 96분**

▣ 시각장애인 중 기타 시각장애인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2. 3. 18.(금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舊 1~3급) · 상이등급(1~3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 ※ **제출기한**: 2022. 3. 18.(금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*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손, 목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 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▶ **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** 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80분 → 96분** ▶ **대필지원** ▶ **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舊 4~6급) · 상이등급(4~7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2. 3. 18.(금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舊 1~3급) · 상이등급(1~3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 ※ **제출기한**: 2022. 3. 18.(금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 ▶ 시험시간 연장(1.2배): 80분 → 96분 ▶ 대필지원 ▶ 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舊 4~6급) · 상이등급(4~7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2. 3. 18.(금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▣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

지원요건	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장애인증명서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제출기한: 2022. 3. 18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≪임신부・과민성 대장(방광) 증후군≫ ▣ 의사 소견서 1부 ※ 제출기한: 2022. 3. 18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※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ex) 상기인은 임신( )주, 필기시험 예정일(2022. ○. ○.)을 전・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하지 지체장애인: 별도(저층)시험장(실)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▶ 임신부・과민성 대장(방광)증후군 :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,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▶ 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

【강원지방우정청 주소 및 연락처】

지 역	우정청명	주소	전화/팩스
강 원	강원지방우정청	원주시 서원대로 412(단구동 1513) 강원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㉾ 26485	033)749-2047 0505-005-2197